

새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(발췌)

연습용 가상 자료

2026. 3. 1. 개정 · 연습용 가상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새봄학교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새봄학교 1~3학년 전체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2장 평가

제5조(지필평가) ① 지필평가는 학기당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과목별 반영 비율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② 지필평가 문항은 동 학년 동 교과 교사가 공동 출제한다.

제6조(수행평가) 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중 실시하며, 과제형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.

② 수행평가 결과는 평가 후 7일 이내에 학생에게 공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.

③ 수행평가 미응시자는 해당 영역 최하 등급 점수의 기본 점수를 부여한다. 다만 인정 결석은 제12조를 따른다.

제7조(성취기준 안내) 교과별 평가 계획은 학기 초 2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한다.

제3장 결시자 처리

제12조(인정점) ① 질병·경조사·국가 행사 참여 등 인정 결석으로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, 해당 영역 성적의 100%를 인정점으로 부여한다.

② 인정점 신청은 결석 후 5일(수업일 기준) 이내에 증빙 서류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.

제13조(무단 결시) 무단 결시자는 해당 평가의 최저점을 부여한다.

제4장 이의신청과 성적 확정

제15조(이의신청) ① 학생은 수행평가 결과 공개 후 3일(수업일 기준) 이내에 교과 담당 교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② 교과 담당 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학생에게 알린다.

제16조(성적 확정) 학기말 성적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확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